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강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67 발의연월일: 2025. 1. 23.

발 의 자:이강일・김문수・김남희

정준호 · 김남근 · 김현정

염태영 · 황운하 · 민병덕

박정현 • 황명선 • 김우영

이용우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서 정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중 군과 관련된 인사로는 국무 위원인 국방부장관과 합동참모의장이 포함되어 있음.

그러나 최근 계엄 등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미흡한 면이 드러난 바가 있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.

이에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을 군 최고위급인 대장 계급의 육군참모 총장, 해군참모총장, 공군참모총장까지 확대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에 대한 합리적 지휘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65조의2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

안」(의안번호 제7759호) 및 「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776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"한국은행 총재"를 "육군참모총장, 해군참모 총장, 공군참모총장, 한국은행 총재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생	제65조의2(인사청문회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	②
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	
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	
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	
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.	
1.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	1
소 재판관, 중앙선거관리위원	
회 위원, 국무위원, 방송통신	
위원회 위원장, 국가정보원장,	
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, 금융	
위원회 위원장, 국가인권위원	
회 위원장, 고위공직자범죄수	
사처장, 국세청장, 검찰총장,	
경찰청장, 합동참모의장, <u>한국</u>	
은행 총재, 특별감찰관 또는	육군참모총장, 해군참모총장,
한국방송공사 사장의 후보자	공군참모총장, 한국은행 총재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